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기관과정

항공안전법과 정책동향



20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목 차

- 항공 법규 체계
-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세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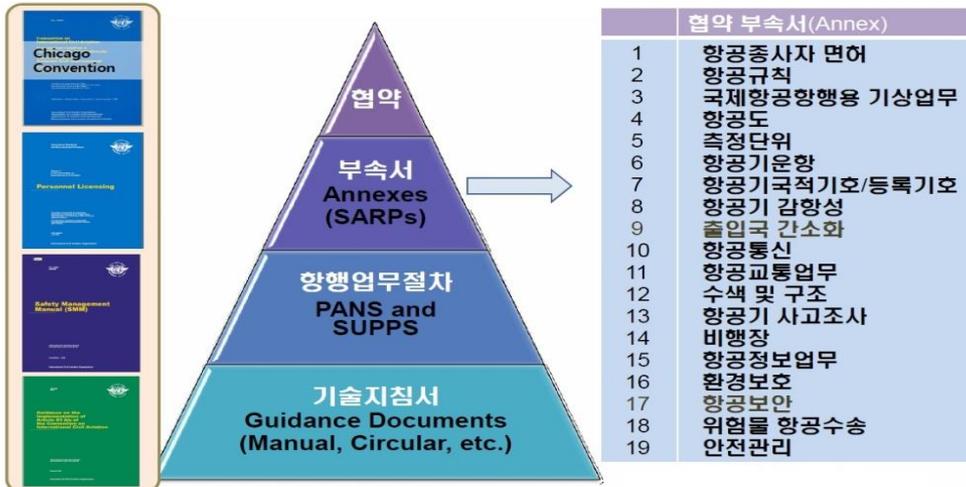
1. 항공 법규 체계

국제민간항공기구 규범

❖ 항공안전법 제1조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시카고 조약 : 1944년 12월 ICAO에서 제정, 미국 시카고에서 서명(1952년 12월 가입)
- ✓ **협약**(체약국 상공비행, ICAO 조직운영, 분쟁과 위약)과 **부속서(Annex)**로 구성

*Annex :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과 방식, Annex 1(Licensing)~Annex 19(Safety Man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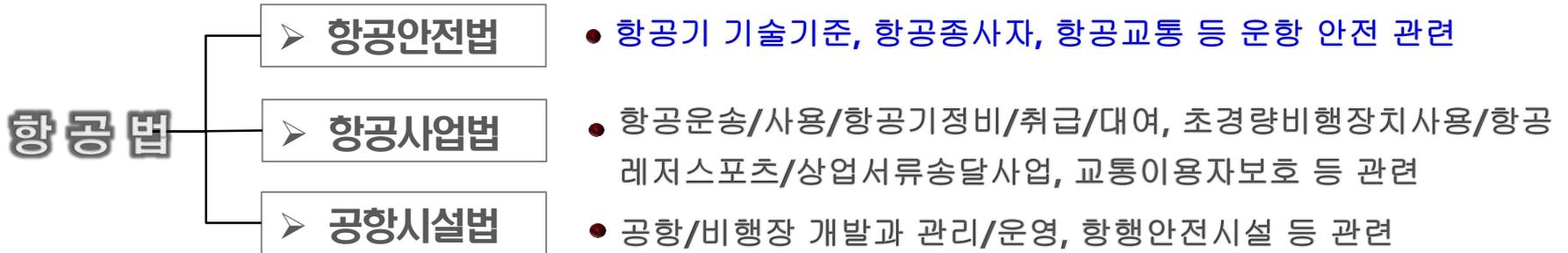
현행 무인항공기 기준

- ✓ ICAO 기준의 무인항공기 기준 마련 단계
- ✓ **각 국가별 무인항공기운용 관련 규정을 정하여 운영**

1. 항공 법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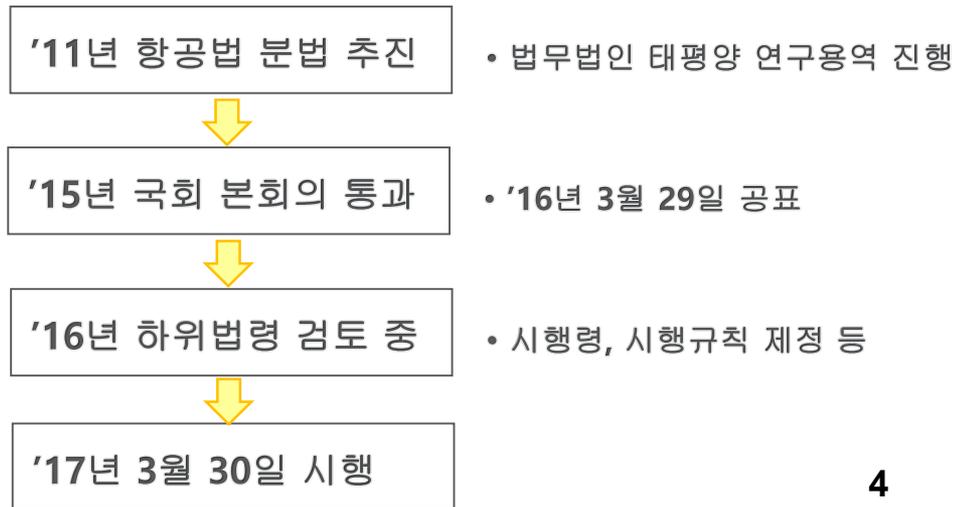
항공법 분법

- ❖ 1961.3월 대한민국 항공법 최초 제정
- ❖ 2017.3월 기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 시행



❖ 개정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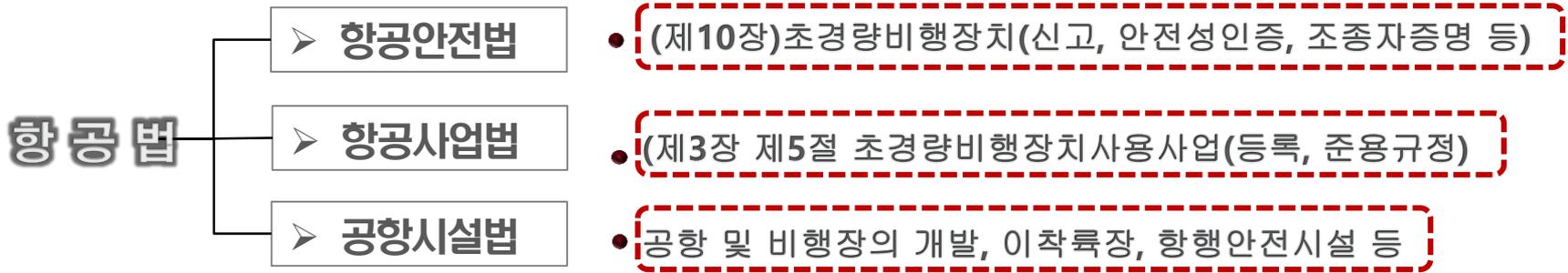
- ✓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 ✓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1. 항공 법규 체계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률 구성

- ❖ 2009. 6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이때까지 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로 구분)
- ❖ 2017. 3월 무인비행장치가 추가된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법규로 구분 시행



❖ 초경량비행장치 범위(구분)

-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 ✓ 무인비행장치
 - 무인동력비행장치
 - 무인비행선

1. 항공 법규 체계

항공안전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 | -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생활법령 2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검색 ?

법령 (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등 별표·서식 학칙·규정 그밖의 정보

현행법령 ○ 연혁법령 ○ 근대법령 ○ 외국어번역 ○ 최신법령 ○ 조약 **상세검색** 분류검색

법령명 법령본문 조문내용 조문제목 부칙 제정·개정문 **조회이력** 새창(목록) 표준국어대사전

항공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3호, 2020. 6. 9.,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서식

2. **항공안전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13호, 2020. 12. 8., 일부개정]

3. **항공안전법** [시행 2022. 11. 27.] [법률 제17463호, 2020. 6. 9., 일부개정]

4. **항공안전법** [시행 2022. 11. 27.] [법률 제16643호, 2019. 11. 26., 일부개정]

5.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59호, 2020. 12. 10., 일부개정]

6.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0715호, 2020. 5. 26., 일부개정]

7. **항공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2. 11. 27.] [대통령령 제30715호, 2020. 5. 26., 일부개정]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 [국토교통부령 제786호, 2020. 12. 10., 일부개정]

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국토교통부령 제786호, 2020. 12. 10., 일부개정]

1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국토교통부령 제730호, 2020. 5. 27., 일부개정]

1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 [국토교통부령 제703호, 2020. 2. 28., 일부개정]

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1.] [국토교통부령 제786호, 2020. 12. 10., 일부개정]

1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국토교통부령 제786호, 2020. 12. 10., 일부개정]

1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1.] [국토교통부령 제786호, 2020. 12. 10., 일부개정]

본문 **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준비고** **신규법** **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관련 연 연혁 임 위임행정규칙 규제

항공안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63호, 2020. 6.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쓸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가. 비행기
 - 나. 헬리콥터
 - 다. 비행선
 - 라. 활공기(滑空機)
-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쓸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미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쓸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항공 법규 체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등 운영세칙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운송 자격시험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English | < > | < >

신속한 상담사 인공지능 챗봇

정보공개 | 고객참여 | 사업소개 | 정보마당 | 소식알림 | 공단소개

정보공개 > 경영공시 > 통합공시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행정정보공표
- 공공데이터 개방
- 경영공시**
- 통합공시
- 자율공시
- 기타정보
- 사업실명제

TS 고객만족센터
1577-0990
상담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통화료 : 사용자 부담)
ARS 구성도

고객의 소리

경영공시 안내
공단의 중요 경영정보를 고객에게 충실히 제공하여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l public information in One

통합공시 | 자율공시

I. 일반현황

1. 일반현황

II. 기관운영

2. 임직원 수
3. 임원 현황
4. 신규채용, 청년인턴채용, 유연근무 현황
5. 임원연봉
6. 직원 평균보수
7. 기관장 업무추진비
8. 복리후생비
9. 그밖의 복리후생제도 등의 운영현황
 - 제도운영 상황
 - 노조운영 지원비
 - 영리시설, 장비운영권 노조위탁
 - 단체협약상 별도 합의사항
 - 단체협약외의 별도 합의사항
10. 임원 국외출장 내역
11. 노동조합 관련현황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보
 - 단체협약
 - 임금협약
 - 노사협의회 비결사합
12. 내부규정
13. 징계현황

III.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16. 요약 재무상태표
17. 요약 손익계산서 (또는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18. 수입·지출 현황
19. 주요사업
20. 투자집행내역
21. 자본금 및 추후현황
22. 장단기 차입금 현황
23. 투자 및 출자 현황
 - 퇴직 임원 채용현황
 - 퇴직 직원 채용현황
 - 대규모 거래내역
 - 신규시설 투자
24. 연간출연 및 증여
25. 경영부담비용 추계
 - 기타 경영상 부담이 될 사항
26.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7. 12개 주요기관의 상세부채 정보 (해당사항 없음)
28. 납세정보현황
 - 세무확정내역
 - 조세포탈현황(유죄판결 확정내역)
29. 감사보고서

IV. 대내외 평가

30. 국회지적사항
31.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32. 경영실적 평가결과
33. 경영평가 지적사항
34.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5. 감사직무실적 평가결과
36. 이사회회의록, 내부감사결과

V. 공지사향

37. 경영혁신사례
38. 임직원 채용공고
39. 계약정보
 - 입찰공고
40. 연구보고서
41. 안전관리 현황
 - 산업재해
 - 안전사고
 - 안전관리 책임자
42. 기타정보공개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정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u>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u>로서 자체 중량, 좌석 수 등 <u>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u>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p>	<p>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에서 "<u>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u>"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p> <p>1호~ 4호 <생략></p> <p>5. <u>무인비행장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u></p> <p>가. <u>무인동력비행장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u></p> <p>나. <u>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이하 생략></u></p>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 신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p>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u>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u>(“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등”)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u>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u>하여야 한다.</p> <p>다만, <u>대통령령(시행령)</u>으로 정하는 <u>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2항~제5항 <생략></p>	<p>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법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u>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u>을 말한다.</p> <p>1호~4호 <생략></p> <p>5. <u>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u> (→ 신고 제외 장치 : 2kg 이하면서 대여업/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기체)</p> <p>6. <u>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u></p> <p>7. 연구기관 등이 <u>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u>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p> <p>8. 제작자 등이 <u>판매가 목적이거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u></p> <p>9. <u>군사목적</u>으로 사용</p>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 신고

시행규칙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 신고서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장치 신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u>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u>를 하여야 한다.</p> <p>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u>멸실되었거나 그 초경량비행장치를 해체</u>(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u>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u>를 하여야 한다.</p> <p>제3항~제4항 <생략></p>	<p>제302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① 법에서 "<u>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u> 2. <u>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 명칭 또는 주소</u> 3. <u>초경량비행장치의 보관 장소</u> <p>②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u>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u> 별지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u>변경·이전신고서</u>를 <u>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u>하여야 한다.</p>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안전성인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시험 비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가 정한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따라 그 초경량비행장치가 <u>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u>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u>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제305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등) ① 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p> <p>1호 ~ 3호 <생략></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p> <p>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p> <p>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u>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또는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u></p> <p>5. 회전익비행장치</p> <p>6. 동력패러글라이더</p> <p>② 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기술원 또는 별표 43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검사기관 항공안전기술원)</p>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조종자 증명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동력비행장치 등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u> (중략) 해당 <u>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u>(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u>을 받아야</u> 한다. 이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① 법에서 "<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u>"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u>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u>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조종자 증명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계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이 "법"은 항공안전법을 의미)
3.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6.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u>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u>교육과목, 교육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한다.</p>	<p>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략) 전문교육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u>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u>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문교관의 현황</u> 2. <u>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u> 3. <u>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u> <p>② 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u>전문교관이 있을 것</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비행시간이 200시간(<u>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00시간</u>)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u>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u> 나. 비행시간이 300시간(<u>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조종경력이 150시간</u>)이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u>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u>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 포함)를 갖출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u> 나. <u>이륙·착륙 시설</u> 다. <u>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u> 3. 교육과목, 교육시간, 평가방법 및 교육훈련규정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u>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u><이하 생략>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계속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u>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u> 2. 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u>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u>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u>미달하는 경우</u> 	<p>제307조의 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육성 등) ① <u>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훈련 과정의 내용·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u></p> <p>② <u>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u></p>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비행승인

항공안전법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68조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 (→ 150m)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2. 제78조제1항에 따른 **관제공역 · 통제공역 · 주의공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 관제공역 중 관제권,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의미)**

시행규칙

제25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단서에서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비행장에서 법 제83조(비행장, 공항, 관제권, 관제구 업무수행 관련)에 따른 항공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의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비행승인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① 법 제127조 본문에서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 **비행승인 예외 장치**)

1호~2호 <생략>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 (→ **농업지원용 의미**)에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제221조제1항 및 별표 23에 따른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

나. 가축전염병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방역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가.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② <생략>

③ **지방항공청장은 ~<중략>~ 제출된 비행승인신청서가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비행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비행기간을 명시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이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3. 법에 따른 관제공역·통제공역·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와 지방항공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 계속</p> <p>④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 계속</p> <p>6. <u>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야간비행 금지, 단 특별비행승인 등을 받은 경우는 가능)</u></p> <p>7. 「주세법」에 따른 <u>주류</u>,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마약류</u>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u>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u></p> <p>8. <u>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u></p> <p>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p> <p>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p> <p>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u>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u>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가시권 비행금지, 단 시험비행허가나 특별비행승인 받으면 가능)</p> <p>⑤ <생략></p>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안전개선명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u>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초경량비행장치</u> 및 그 밖의 <u>시설의 개선</u> 2. 그 밖에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u>국토교통부령</u>으로 정하는 사항 	<p>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운용중인 초경량비행장치에 장착된 <u>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장비의 제거</u> 2. 초경량비행장치 <u>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의 이행</u> 3.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u>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기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p>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p>	<p>*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①~ ④ <생략></p> <p>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p>⑥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 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 혈중알코올농도 0.02퍼센트 이상 0.06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6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6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효력 정지 12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 이상: 효력 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처벌기준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 시 처벌기준

종 류		장치신고/ 변경신고	신고번호 표시	조종자 증명	조종자 준수사항	
안전 관리 제도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사업	○	○	○(250g초과)	○
		비사업	○	○	○(250g초과)	○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사업	○	○	○(250g초과)	○
		비사업	X	X	○(250g초과)	○
위반 시 처벌기준		징역	6개월 또는	-	-	-
		벌금	500만원	-	-	-
		과태료	-	100만원	300만원	200만원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처벌기준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 시 처벌기준

종 류		안전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비행제한 공역	비행금지 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안전 관리 제도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	○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X	X	○	○	○
위반 시 처벌기준		징역	-	-	-	-
		벌금	-	200만원	-	-
		과태료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 항공안전법 주요내용 – 처벌기준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 시 처벌기준

- 주류등 영향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거나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한 사람 또는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안전개선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벌금**
- 초경량비행장치의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위한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3. 4. (생략)

5. “지도조종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의2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6. “실기시험위원”이란 조종자증명시험의 실기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공단이사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종자증명시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② 이 세칙에서 정하는 조종자증명시험 대상은 규칙 제30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7조(업무범위, 응시 및 면제기준 등)

- ① 제6조의 조종자증명의 종류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무인멀티 : 만 14세 이상,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 보유자로 무인멀티콥터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무인헬기 : 만 14세 이상, 무인헬리콥터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 보유자로 무인헬리콥터 비행경력 10시간 이상
- ②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과시험 면제
 2. <생략>
 3. 외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 인정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 실기시험 면제
 4.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에 한한다)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가. 타면조종형비행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 나. 경량헬리콥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 다. 동력패러슈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면제
 5.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
 6.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9조(비행경력 등의 증명)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비행경력 또는 강하경력(“비행경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증명한 비행경력등
2. 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가 증명한 비행경력등 (→ 전문교육기관 또는 사설교육기관 소속)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나 그 산하단체의 장이 증명한 비행경력등 (→ 대한민국항공회, 농업무인헬기협회, 한국모형항공기협회 등)

② 비행경력등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따른다.

2. 제6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비행경력증명서																		
1.성명:		2.소속:			3.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4.연락처:									
① 일자	② 비행 횟수	③ 초경량비행장치					④ 비행 장소	⑤ 비행 시간 (hrs)	⑥ 임무별 비행시간				⑦ 비행 목적 (훈련 내용)	⑧ 지도조종자				
		종류	형식	신고 번호	최종 인증 검사 일	자체 중량 (kg)			최대 이륙 중량 (kg)	기장	훈련	교관		소계	성명	자격 번호	서명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비행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발급번호는 기관명-년도-월-발급순번으로 기재합니다.(예, 전문-2020-01-01, 사설-2020-01-01)
3.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4.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비행횟수를 단독비행과 동승비행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무인비행기, 무인헬리/멀티콥터), 형식(모델명), 신고번호, 해당일자에 비행할 당시 초경량비행장치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 안전성인증검사 면제대상인 기체는 최종인증검사일에 "면제"로 기재할 것
6. ④항 비행장소는 해당 비행장치로 비행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예: 경북 김천
7. ⑤항 비행시간(hrs)은 해당일자에 비행한 총 비행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 시간(HOUR) 단위 기재 예시: 48분일 경우 → 시간단위로 환산(48÷60)하여 0.8로 기재, 소수 둘째자리부터 버림
8. ⑥항 비행임무별 비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시간: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은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시간을 기재하고,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도조종자의 교육하에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 훈련시간: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 교관시간: 지도조종자가 비행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생을 실기 교육한 비행시간을 시간(HOUR)단위로 기재
9. ⑦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은 비행목적을 기재하고,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내용을 기재
10. ⑧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비행 교육을 실시한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비행경력증명서 작성 예시 - 전문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 ❖ 홍길동, 전문교육기관명 '철수드론교육원', 전문교육기관장 '김철수', 지도조종자 '고길동' 가정
 - 지도조종자 고길동은 철수드론교육원의 소속 교관
- ❖ 교육생 홍길동은 '21.1.3.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것으로 가정

비행경력증명서 (Certificate of Flight Experience)

1.성명: 홍길동		2.소속: 한국000000		3.생년월일(여권번호): 76.05.01		4.연락처: 010-000-0000											
① 일자	② 비행 횟수	③ 초경량비행장치						④ 비행 장소	⑤ 비행 시간	⑥ 임무별 비행시간				⑦ 비행목적 (훈련내용)	⑧ 지도조종자		
		종류	형식	신고 번호	최종 인증 검사일	자체 중량 kg	최대 이륙 중량 kg			기장	훈련	교관	소계		성명	자격 번호	서명
'21.1.2	2	무인 멀티콥터	VANDI-A1	S7000B	'18.4.30	15.1	25.1	경북 김천	0.5	-	0.5	-	0.5	원주비행	고길동	91-000000	고길동
'21.1.3	2	무인 멀티콥터	VANDI-A1	S7000B	'18.4.30	15.1	25.1	경북 김천	0.7	0.7	-	-	0.7	삼각비행	고길동	91-000000	고길동
계 (Total)	5	-	-	-	-	-	-	-	1.2	0.7	0.5	-	1.2	-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비행경력을 증명합니다.

발급일(Date of Issue): '21. 1.3 발급기관명(Issuing Organization)/주소(Address) : 철수드론교육원/경북 김천시 혁신6로

지도조종자(Instructor): 고길동 (인) 발급책임자 : 철수드론교육원장 김철수 (직인) 전화번호(Phone No.) : 054-450-0000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비행경력증명서 작성 예시 - 사설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 ❖ '홍길동', 기관명 '영수드론아카데미', 지도조종자 '김영수, 정우성'으로 가정
 - 지도조종자 4명은 영수드론아카데미의 소속 교관으로 실제 교육 실시
- ❖ 교육생 홍길동은 '21.1.3.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것으로 가정

비행경력증명서 (Certificate of Flight Experience)

1.성명: 홍길동		2.소속: 한국000000		3.생년월일(여권번호): 76.05.01		4.연락처: 010-000-0000											
① 일자	② 비행 횟수	③ 초경량비행장치						④ 비행 장소	⑤ 비행 시간	⑥ 임무별 비행시간				⑦ 비행목적 (훈련내용)	⑧ 지도조종자		
		종류	형식	신고 번호	최종 인증 검사일	자체 중량 kg	최대 이륙 중량 kg			기장	훈련	교관	소계		성명	자격 번호	서명
'21.1.2	2	무인 멀티콥터	VANDI-A1	S7000B	'18.4.30	15.1	25.1	경북 김천	0.5	-	0.5	-	0.5	원주비행	김영수	91-000000	김영수
'21.1.3	2	무인 멀티콥터	VANDI-A1	S7000B	'18.4.30	15.1	25.1	경북 김천	0.7	0.7	-	-	0.7	삼각비행	정우성	91-000000	정우성
계 (Total)	5	-	-	-	-	-	-	-	1.2	0.7	0.5	-	1.2	-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비행경력을 증명합니다.

발급일(Date of Issue): '21. 1.3 발급기관명(Issuing Organization)/주소(Address) : 영수드론아카데미/경북 김천시 혁신6로

발급책임자 | 영수드론아카데미 지도조종자 자격번호 김영수(또는 정우성) (날인) | 전화번호(Phone No.) : 054-450-0100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2(지도조종자 등록 등)

①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2. 비행경력증명서등

3. 규칙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증명서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별표 1의2에 따른 비행장치종류별 지도조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지도조종자로 등록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그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

- ① 공단 이사장은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조종자증명 취소 또는 1년 이내 효력정지 처분 받은 경우 의미)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등(로그북 포함)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로그북 작성 및 관리 필수!! 로그북은 매 비행 별로 작성!! 매 비행별 이륙·착륙시간 기재 및 지도조종자 서명 필수!!)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경우
-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 공단 이사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지도조종자가 다시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조종교육교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0조(비행시간 또는 강하횟수의 산정)

① 비행경력등은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은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시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 (지도조종자 시험과목 및 범위)

종류별	업무범위		등록기준
공 통	지도조종자	비행시간 확인 및 교육훈련	1. 만 20세 이상인 사람 2. 해당 비행장치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
무인비행기	지도조종자	무인비행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헬리콥터	지도조종자	무인헬리콥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	무인멀티콥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비행선	지도조종자	무인비행선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무인비행선을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 제한)

-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2. 조종자증명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3. 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15조 (조종자증명의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법에 따른 조종자증명의 취소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규칙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비행장치 조종자 신체검사) 비행장치 조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체검사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2.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운영세칙

제37조(실기시험 준비 등)

- ① 실기시험에 필요한 제반장비 등은 실기시험을 신청한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제38조(실기시험의 방법)

- ① 실기시험은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 ② 실기시험은 자격별 기능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비행장치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비행장치의 경우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회전익비행장치의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실기시험은 응시자 1인에 대하여 1인 이상의 실기시험위원이 별표 2의 시험과목 및 범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최초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현장실무교육(OJT)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 ④ 총괄책임자는 실기시험의 진행 또는 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실기시험감독위원을 지명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기시험위원이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실기시험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실기시험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실기시험표준서(부록)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합격자의 결정 및 발표)

- ① 실기시험의 합격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채점표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어야 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세칙

제1조(목적) 제122조, 제123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부터 제303조까지에 따른 초경량비행 장치의 신고에 관한 절차·방법·신고대장 관리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신규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최초로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3. “변경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주소, 초경량 비행장치의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4. “이전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5. “말소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행하는 신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세칙

제4조(신규신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별지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가로 15cm x 세로 10cm의 측면사진)

제5조(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성명·명칭,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전신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 운영세칙

제7조(말소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에 말소사유를 기재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4.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제8조(신고접수 창구)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신규·변경·이전·말소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전산시스템 또는 e-mail·팩스·우편·방문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마치며...

- ❖ 항공안전법의 명확한 이해는 운항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보류입니다...

Thanks Attention!